

이주여성인권연대 1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

이주·여성인권연대

<http://shmw.kngo.info/seminar>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730-011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산 24-1 /T:054)452/2314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614-044 부산시 진구 전포 4동 193-9 4층 /T:051)802/3438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집

430-832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676-136 /T: 031)443/2876

이주여성인권연대 1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

이주·여성인권연대

<http://shm.w.kngo.info/seminar>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730-011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산 24-1 /T:054)452/2314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614-044 부산시 진구 전포 4동 193-9 4층 /T:051)802/3438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집

430-832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676-136 /T: 031)443/2876

【 차 례 】

토론회 취지	-----	3
발제 및 증언		
발제 1. 여성이주노동자관련 인권조약과 법률 그리고 권리	-----	5
한국여성개발원 오정진		
발제 2.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박점관	-----	19
구미 가톨릭 근로자문화 센터 모경순	-----	30
증언. 한국에서의 6년 생활 - 몽골 여성 미라	-----	39
My life as an asylum seeker in South korea	-----	47
성명서	-----	50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취지

세계화의 폐해로 인하여 여성들의 이주노동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기혼 여성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녀들을 두고 국경을 넘고 있다. 미혼여성들은 전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유보 한 채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급격한 이주노동 증가의 한 현상은 국내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실체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2002년 현재 국내에는 10만명 이상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 연수비자, 연예·유흥과 단기 관광 비자, 혼인 혹은 난민이나 피난처가 필요하여 입국한 여성들이 제조업은 물론, 가사노동과 음식업, 유흥업소, 농장, 학원등 여러분야의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등록과 미등록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은 이제 사실상 다국적 노동자들이 공존하며 노동을 하고 있어 이미 국적의 의미가 노동현장에서는 퇴색되고 있다. 더싼 임금과 더 긴 시간의 노동을 구할 수 있다면 현재는 더 많은 노동력이 이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세계화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의 틈이므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양적 규모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통계자료들이 증거하고 있다. 특히 연수제도가 더욱 고착되고 있으며 가사노동과 요식업등에 종사할 여성들을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이주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에, 그동안 국내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해온 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인권단체와 관련 부처들은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에 노동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차별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겪는 문제에 공동 대처를 하고 바람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종차별적인 요인을 줄이는데 있어 기초 적인 행보가 될 것이다.

더반 NGO 선언문(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최종 보고서)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중적인 차별과 여성들의 다중적인 차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적인 보호망 없이 노동권의 보장 없음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등록, 미등록을 불문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음이 우려된다.

이주여성들은 특히 국적, 종교, 인종, 언어능력, 출신배경, 사회적 위치, 외모, 결혼 여부등에 따라 차별이 다중화 될 염려가 있으며 이미 그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현장 구성원들의 다국적화 되어 차별이 한층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를 노출시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들에게 작은 등불을 밝혀 밝은 세상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주·여성인권연대 창립 1주년을 맞아 본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지난1년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2002.3.29 정귀순 모경순 이금연

이주·여성인권 연대 1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발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갖는 자리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불안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누고자 합니
다.

2002년 3월
이주·여성인권연대
모경순, 정귀순, 이금연 드림

일시 :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장소 :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06호 (전화 02-6364-2200)
(지하철 1호선 시청 역 덕수궁 돌담길로 오시면 됩니다)
주최 : 이주·여성 인권연대
후원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노총 평등노조, 새사회 연대, 여성신문사,
천주교 대안경제연대, 한국 CLC.

- 차례 -

제1부 : 발제 및 증언

발제 1. 여성이주노동자관련 인권조약과 법률 그리고 권리

-한국여성개발원 오정진-

발제 2.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①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박점관

② 구미 가톨릭 근로자문화 센터 모경순

증언. 한국에서의 6년 생활 - 몽골 여성 미라

제2부 : 지정토론

토론1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협력실 조영숙

토론2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토론3 노동부 고용정책과 [집터]

진행 : 이금연 성명서낭독 : 부산외국인 노동자인권모임 김민정

문의 : 이영아 (전화 031-443-2876/HP011-9720-8006)

발제 I.

여성이주노동자관련 인권조약과 법률 그리고 권리¹⁾

오정진(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I. 인권의 향유자로서의 이주노동자: 그 이념과 현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장이라는 인권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도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인권관련규범상의 인권을 보장받음은 물론이다. 그런 맥락에서, 1948년의 UN 세계인권선언²⁾이나 1966년의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³⁾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⁴⁾은 명시적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UN이 1963년 11월 20일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총회결의 1904(XVIII))'을 거쳐 1966.3.7. 채택한 인종차별금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1969. 1. 4 발효),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대로 정의하고(제1조 1) 그러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이에 의해 규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ILO의 경우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Foreign worker"라 하지 않고 "Migrant worker"라 호칭하고, 경제적 혹은 기타 이유로 외국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이익을 보호하는 데 힘써왔는데, 1919년의 외국인노동자의 상호대우 권리(제25호), 1925년의 재해보상에서의 평등대우조약(제19호), 1935년의 이주노동자의 연금에 대한

- 1) 이 글은 김엘립·오정진이 연구한 한국여성개발원의 2001년도 보고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의 관련 부분을 상당 부분 발췌한 것이다.
- 2) 동 선언은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상 다른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신분, 재산, 가문 또는 그 외의 지위 등이나 비슷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담겨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3) 제2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4)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권리에 관한 조약(제48호), 1939년의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리(제66호)와 조약(제61호; 이주노동자 조약), 1949년의 이주노동자에 관한 협약(제97호)과 권리(제86호), 1955년의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자 보호협약(제100호), 1958년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조약; 약칭 '차별대우협약'), 1962년의 사회보장에서의 평등대우협약(제118호), 1975년의 "열악한 조건의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협약"(제142호) 및 동 권리(제151호), 1982년의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에서의 권리유지에 관한 조약(제157호)과 권리(제167호)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인권규범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제시는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각국의 국내법적 근거와 연결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원용되기는 힘들다. 더욱이, 그나마 이주노동자와 관련성이 짙은 인종차별금지협약도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제1조 2), 협약의 어느 규정도 어느 특정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협약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국에서 본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ILO 조약의 경우도 가입국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당사국의 필요에 의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부분적인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주노동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UN은 근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정적인 규범을 발전시키고 있다. 1985년 제40회 총회의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약칭 '외국인의 인권선언')"을 이어 1990년 12월 18일 제69차 총회에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약칭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바로 그것으로서, 이 협약은 민족적 출신뿐만 아니라 국적(nationality)에 의한 차별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20개국이상이 비준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송출국과 고용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 고용국 중에는 비준국이 없는 상황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해 UN은 각국에게 동 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2001년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비관용을 철폐하는 '국제이주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Mobilization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와 관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문명간의 대화의 해(United Nations Year of Dialogue among Civilizations)로 정하고,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⁵⁾를 개최하는 등 힘쓰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는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5) 이 회의의 정식명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이와 관련된 비관용을 철폐하기 위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이며 2001.8.31-9.8,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되었다.

II.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그러한 까닭에 자연히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도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여성이주노동자문제는 아직 규범의 내용으로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가장 최근의 국제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권리조약의 경우도 성에 따른 차별금지⁶⁾를 규정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있지만 여성이주노동자의 특수한 문제상황에 대한 고려는 1994년 12월 23일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유엔 결의 49/165가 채택되었을 뿐, 조약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은 일찍부터 있어왔으며⁷⁾, 다행히 1995년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래 여성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는데⁸⁾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은 각 국가에게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취약상황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 북경선언

32.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하는 모든 여성과 소녀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 북경행동강령

6) 제1조 1.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

7) 1904년의 '국제백인노예거래금지협정', 1910년의 '국제백인노예밀매금지협약', 1921년의 '여성과 아동밀매금지협약', 1933년 '국제성인여성밀매금지협약', 1949년의 '인신매매 및 태인의 매춘을 통한 착취금지협약', 1979년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이다.

8) UN인권위원회의 결의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1995/85)에 따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이주여성, 특히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폭력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나, 1998년에 각 국가들이 이주노동자권리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UN 사무총장에게 이 조약의 비준현황과 아울러 여성 이주근로자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2000년 2월 29일에는 인권위원회 결의 1997/44에 의해 '여성밀매 및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보고서가 제출되었다.

○ 전략 목표와 행동

46. 행동 강령은 여성이 인종, 연령, 언어, 민족성, 문화, 종교 또는 장애, 토착민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기타 지위 때문에 완전한 평등 및 향상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성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가족지위, 특히 편부모로서의 지위 및 농촌, 외딴 지역 혹은 가난한 지역의 생활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된 특별장애물에 봉착한다. 이민 여성과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국내 난민 여성을 포함한 피난민여성과 기타 난민 여성에게도 추가적 방해물이 존재한다. 많은 여성 또한 환경적 재해, 심각하며 전염성있는 질병 및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 폭력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는다.

A. 여성과 빈곤

○ 정부는 여성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 이주자에 대한 인권 및 폭력, 착취로부터의 보호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한다; 여성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합법 여성이주자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여성이주자의 기술, 해외교육 및 자격증명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통해 합법 여성이주자의 생산적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력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촉진한다.

○ 국가·국제비정부기구·여성단체는 사회개발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농촌·토착민 여성, 여성세대주, 젊은 여성, 노인여성, 피난민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과 같은 가장 빈곤하고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 향한 빈곤 퇴치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기관, 비정부기구, 풀뿌리 및 여성그룹을 포함한 개발과정에 연관된 모든 당사자를 동원한다.

B. 여성 교육 및 훈련

○ 정부는 성별, 인종, 언어, 종교, 국적, 연령, 혹은 장애, 혹은 기타 형태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에 있어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목표를 향상시키고, 적절하게 불만을 역설하기 위한 절차수립을 고려한다.

○ 정부, 국가·지역·국제기구, 양자 및 다자 기여자 및 비정부기구는 농촌여성, 이주여성, 피난민여성, 국내난민여성, 장애여성에 역점을 두고, 여성의 문맹률을 적어도 1990년 수준의 반까지 줄인다.

○ 정부는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여성과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국제·비정부기구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낮거나 교육을 받지 못

한 성인여성, 장애여성, 합법 이주여성, 피난민여성, 난민여성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질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 소수민족집단 여성, 토착민 여성, 난민여성, 여성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여성이주자,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사는 빈곤여성과 빈민여성, 감금상태의 여성, 여자아린이, 장애인여성, 노인여성, 피난민여성, 송환된 여성, 빈곤상황하의 여성과 무력분쟁 및 외국인 점령, 침략전쟁, 내란, 인질억류를 포함한 테러행위의 상황하에 있는 여성 등과 같은 여성집단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

○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공사부문, 특히 기업, 미디어 등은 성에 기반한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여성 및 소녀들에게 언어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확립한다.

○ 유입국가에서의 법적 지위가 그들의 상황을 착취할 수 있는 고용주에게 달려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한 폭력과 기타 형태의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인식한다.

○ 정부, 고용자, 노동조합, 지역사회 및 청소년단체 및 비정부기구 등은 특히 젊은 여성, 난민, 국내 난민여성, 장애자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들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입국과 송출국 양 국가에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현행법률을 시행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개발을 포함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다.

F. 여성과 경제

○ 국내노동자는 물론, 여성이주노동자는 송금을 통해서 본국에, 노동력의 참여를 통해서는 거주하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여성이민자는 거주국에서 본국의 노동자 그리고 남성이민노동자에 비해 보다 높은 실업 상태에 있다.

○ 어떤 새로운 고용기회가 경제의 세계화 결과로서 여성에게 주어졌지만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켜왔던 경향도 있다. 동시에 경제통합을 포함한 세계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무역변화의 패턴으로서 새로운 고용원(source)을 찾도록 여성의 고용상황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세계화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보다 더 요구된다.

○ 이 경향은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의 직업적 건강과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과 직업안정의 부족, 낮은 기술수준,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거의 전무한 노동기준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여성의 실업은 많은 나라와 여러 부문에서 심각하고도 중대하는 문제이다. 비공식 및 농업부문의 젊은 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는 노동 및 이민법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세대주 여성들은 비탄력적인 노동조건과 남성과 사회에 의해 가족책임의 부적절한 분담 등의 이유로 고용기회에서 제한을 받는다.

○ 정부, 고용주, 피용자, 노동조합, 여성단체는 성적이고 인종적인 흐름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훈련, 승진, 건강 및 안전 등의 고용과 고용조건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혼인상의 지위 또는 가족지위상의 관련을 포함하여 성을 근거로 직접·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구제방법과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법을 제정, 시행한다.

○ 해외교육 및 자격증을 보다 잘 인식하고 또한 언어훈련을 포함한 노동시장 훈련에의 통합된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합법적인 이주여성(난민신분과 관련한 1951년 협약에 의거하여 결정된 난민이었던 여성포함)의 생산적인 취업을 촉진한다.

I. 여성과 인권

○ 행동강령은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인권 -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시민, 문화,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인권 - 이 보편적인 것이고 분할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동 회의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보편적 인권의 양도할 수 없고 전제적이며 분할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성 및 소녀에 의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충분하고 평등한 향유는 정부와 유엔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며 여성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에 의한 향유를 침해하고 약화시키거나 무의미하게 한다. 여성폭력철폐선언과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고려하면서 문화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포르노그래피, 인종청소, 무력분쟁, 외세점령, 종교적 및 반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행위로 인해 생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구타와 기타 가정폭력, 성적학대, 성적노예제 및 착취, 여성 및 아동의 국제인신매매, 강제매춘 및 성희롱과 같은 성에 근거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상반되며 퇴치해야만 하고 철폐되어야만 한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통적, 관례적 혹은 현대적 관습의 어떠한 해로운 부분이라도 금지되어야만 하고 철폐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회원국 혹은 개인에 의해 잘못이 저질러졌거나 묵인되었건 간에 사적 및 공적활동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퇴치하고 철폐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인종, 언어, 민족, 문화, 종교, 장애 혹은 사회경제적 계급과 같은 요소들 때문에 또는 원주민, 여성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자, 난민여성 혹은 피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향유하는데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한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 침해의 경우 정보 및 지원체계에의 접근을 확보하는데 직면하는 장애물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 인권의 지식 및 인식의 전반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주변화될 수 있다.

○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매춘 및 섹스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또한 기타 형태의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국제협력을 통하여 대항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인권문서의 이해를 강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여성 및 아동의 조직적 착취에 책임있는 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제협력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민족적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태생 혹은 기타 신분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구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과 남성에 의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 및 보호하는데 우선권을 둔다.

○ 정부는 공무원 특히 경찰 및 군사요원, 교정공무원, 보건 및 의료요원, 이주 및 난민문제를 다루는 이들을 포함하는 사회사업가, 모든 차원의 교육체계에 있는 교사들에게 성인지적 인권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재판관과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들의 공공책임 수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 정부 및 비정부기구,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는 피난민 및 난민여성, 이주여성 및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장치를 알도록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과 행동계획

2001년 8.31-9.8 까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은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주요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언(Declaration)

○ 국가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이와 관련된 비관용의 모든 희생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과 국가는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multiple)의 차별형태를 인정하고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전세계 사회의 발전을 위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행동계획

<총론>

2.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와 이와 관련된 비관용은 인종, 피부색, 혈통(descent), 출신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발생한다는 것과 희생자는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사회적 출신, 빈곤, 출생 기타 신분과 같은 다른 관련된 이유에 기반을 둔 차별로 인해 다중의 또는 가중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38. 아시아인과 아시아 혈통을 포함한 이주자들(migrants)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국제인권조약과 모순되는 여하한 이주정책을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46. 이주자가 자국과 이주국가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51. 고용, 교육과 보건, 사법제도접근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비관용을 제거하는 국제인권조약과 일치해야 한다.

69.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비관용은 여성·여아에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과 그들의 생활조건, 빈곤, 폭력, 다중형태의 차별, 권리의 제약이나 부인의 악화를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중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관련 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행동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70. 여성들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행사에 있어서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비관용으로 인해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불이익, 장애, 어려움과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

근방법을 개발할 필요를 인정한다.

71.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 소수인에 속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하고, 그들의 정당한 표현을 제한시키며, 교육과 고용의 기회에 관해 그들을 차별하려는 시도들을 개탄한다.

72. 교육과 입법,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포함한 모든 국제인권규범의 충실히 이행과 발전이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비관용을 퇴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

<행동계획>

30(h)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이주자 특히 여성과 여아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한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주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국가가 채택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1. 여성이주자의 증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특히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다중의 장애가 교차할 때, 성차별을 포함한 성문제(gender issues)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을 국가에게 촉구한다.; 상세한 연구가 여성이주자에 가해진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자국과 이주국의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조약기구에 대한 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63. 사업분야, 특히 관광사업과 인터넷 제공자로 하여금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특히 성매매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gender)에 기초하고 인종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의 권리, 존엄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개발할 것을 장려한다.

64. 국가에게 입법조치, 방지캠페인과 정보교환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매매금지(anti-trafficking) 대책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 특히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매매를 예방, 퇴치, 철폐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의 효과적인 대책들을 고안, 시행,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67. 국가에게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비관용의 희생자인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특정그룹의 근로자들에 의해 경험된 중대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 기타 다른 예방조치를 고안, 시행,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69. 국가에게 여성과 아동 특히 여아의 인신매매행위와 이주자를 밀입국시키는 행위, 인간

다운 삶을 위협하거나 빚보증금, 노예, 성적 착취, 노동착취와 같은 다양한 착취를 야기하는 관행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에게 그러한 관행을 퇴치하는 기구를 만들고 법 시행과 희생자의 권리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며, 인신매매와 이주자밀입국을 퇴치하기 위해 희생자를 돋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간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할 것을 장려한다.

78. 국가에게 다음의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며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이하 '외국인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협약')

(b) 1949년의 ILO 이주노동협약(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49 (No. 97)

(c) 1949년의 인신매매와 매춘착취 억제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f 1949)

(g) 1979년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f 1979)과 1999년의 동 협약의 정서(Optional Protocol of 1999)

(i) 1975년의 ILO 이주노동자협약(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5 (No. 143)

(k) 1990년의 모든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of 1990)

(m) 2000년의 UN 국가간 조직범죄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선택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영토, 영해, 영공상의 이주자밀수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f 2000)

88. 국가에게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범죄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여 보호와 지원을 하되, 밀매자와 중개자는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

94.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기타 비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질적·양적 연구에 기반을 둬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피해자와 피해집단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7.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기타 비관용이 법, 정책, 제도와 관행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주자, 특히 여성과 아동의 피해자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많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133. 국가에게 보건, 교육, 이주분야는 물론, 사법행정분야, 특히 법 집행, 교정분야의 공직자를 위한 반인종주의적이고 성인지적인 인권훈련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36. 국가에게 교육과 훈련, 특히 교사훈련이 인권존중과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기타 비관용에 대한 투쟁을 촉진할 것과 교육기관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로 동등기회, 반인종주의, 성 평등, 문화적·종교적 기타 다양성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모든 교육단계와 종교집단, 인쇄 및 전자매체의 모든 교육자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기타 비관용에 대한 투쟁수단으로서의 인권교육에 효과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39. 국가에게 법 시행, 이주 및 인신매매방지에 관한 공직자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훈련은 매매방지, 매매자처벌, 피해자의 권리보호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훈련은 인권과 아동 및 성인지적인 이슈를 고려에 넣어야 하며, 비정부기구, 다른 관련조직 및 시민사회부분과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158. 부인할 바 없이 역사적 부정의가 세계의, 특히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의 빈곤, 저개발, 주변화, 사회적 배제, 경제적 격차, 불안정성에 기여해 왔음을 인정하며, 연대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파트너쉽하에 다음의 영역에서 그러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

174. 국가에게 빈곤, 저개발, 그리고 차별적인 관행과 연결되어 특히 여성과 아동이 밀매의 피해자가 되기 쉽게 만들고 그로써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기타 비관용을 초래하는 동등기회의 부족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75. 국가에게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의 충분한 정보하에 결정을 하

고 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의 기회, 제한, 그리고 권리를 부각시키는 캠페인을 열 것을 권고한다.

176. 국가에게 2015년까지,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기타 비관용의 피해자가 직면한 삶의 조건상의 격차, 특히 문맹율, 초등교육, 유아사망율, 5세미만 아동 사망률, 보건, 재생산건강, 안전한 식수에 관한 접근에 관한 격차를 종식시키기 위해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행동강령 36항에 제시된 기본적인 요구 충족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적 자료에 기반한 사회개발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성 평등의 증진 역시 그러한 정책의 채택과 이행시 고려될 것을 촉구한다.

186. 국가에게 여성과 아동, 특히 이주자의 밀수뿐만 아니라 소녀의 매매문제를 다루는 양국간·지역적·국제적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201. UN총회가 인신매매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젊은이, 아동매매방지의 年度나 10年을 선언할 것을 권고한다.

212. 국가에게 성 평등과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지위신장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모든 관련자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확립하고 강화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신장할 것을 촉구한다.

III. 이주여성 인권의 국내법상 보장 현황과 문제점

그런데 여성이주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이주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가지는 국제법상의 인권은 궁극적으로는 당해 국가의 가입·비준에 의해서, 그리고 해당국에서의 관련 국내법의 존재와 그 적용에 의해서만 실효성을 가진다.⁹⁾

우리의 경우 인종차별금지협약은 1979.4.1 국내에 발효되었고(단, 제14조 선언의 적용일 : 1997. 3. 5), 국제인권규약은 1990년 유엔가입후 적용되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85년 1월 26일 국내에서도 발효했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도 근로기준법이 성별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동법 제5조) 인신매매와 성 매매를 금지(윤락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해 왔다.

그러나 내·외국인을 불문한 밀매 금지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여성이주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원이 산업연수생에 대해

9) 2001.5.24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정의한다.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¹⁰⁾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어정쩡한 신분하에서 아직 정당한 근로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받는 차별대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다른 대우'로서 정당화되고 있다. 다만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영역에서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을 하는 한 동법은 적용된다. 그러나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보니, 2001년 11월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규정 중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있었고, 적용되어야 했던 규정도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¹⁾

기타 사회적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회보장기본법(제8조)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긴 하나 현재 중기협 관장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의료보험¹²⁾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고용보험, 국민연금¹³⁾,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¹⁴⁾,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제정된 여성관련 법률들의 경우를 보자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은 여성의 인권신장과 차별금지활동을 할

10) 최근 대법원 판결의 공통된 입장은 외국인이 산업기술연수제도에 의하여 국내기업에 산업기술연수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로 배정되어 그 기업과의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면서 해당기업의 사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 1995.9.15. 판결 94누12067 ; 대법원 1995.12.22. 판결 95누2050. ; 대법원 1997.3.28 판결 96도694 ; 대법원 1997.10.10 판결 97누 10352 : 대법원 2000.09.29, 대법 2000도3051)

11) 예를 들면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68조에 의한 야간작업 금지조항(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69조 시간외 근로조항(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1조 생리휴가조항(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12) 의료보험을 보면, 연수생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수취업기간에는 지역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법 제71조의2, 동 시행규칙 제41조 1항)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산업연수생에 대한 법 적용에 혼선이 보인다(최홍엽(2000), p. 836-840)

13) 국민연금을 보면, 산업연수생은 국민연금이 당연히 적용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 동 시행령 제85조의2, 동 시행규칙 별표 참고). 그러나 연수취업자격은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연수취업자격을 획득하면 국민연금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4) 특히 국내에서 2,3대 조상으로부터 계속 살아온 거주(F-2)의 체류자격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내국인에 한하지도 않으므로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은 내·외국인으로 막론하고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적용되므로 국내체류중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이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 위 법률들은 여성이주노동자는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동 법률들에 의한 지원장치 역시 아직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V.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2001년 11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제30조 제2항)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되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신분과 대우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설정화되었던 그렇지 않건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운위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의 수준과 내용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노동자 일반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철실한 것은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정당하고 평등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지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서 그치지 않고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왕의 협소한 시민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임을 주지하여 기왕의 여성관련법규가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02년에 수립해야 할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나 노동부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에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정책계획 항목에 포함시키고 체계적으로 추진케 하는 것, 그리고 이주노동자문제를 관掌하는 정부기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방경 전반에서 성 인지적인 관심과 노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발제II.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박점관(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I. 들어가며

‘열악한 작업환경, 위험한 작업공정, 힘든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노동력수요에 맞춰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같은 국경을 넘은 이주노동의 시작은 자본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었고, 이를 정부가 출입국관리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저임금의 노동시장을 노린 해외투자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으로 약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업협회 등을 통해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이주한 이들은, 사실상 노동을 함에도 ‘연수생’이라는 허울에 묶여 최소한의 거주권,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이들 이익단체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 앞에 술한 인권유린을 경험해야 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최근 송출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연수생을 위장입국시킨 혐의로 중기협 전 부회장 등 34명이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사건¹⁵⁾은 이들 단체들이 그 토록 연수생제도를 고수하고자 하는 이유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소관부서인 법무부를 통해 내년 3월 31일까지 261,000명에 이르는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자진 또는 강제출국토록 하겠다는 뜻을 담은 ‘불법체류종합방지대책’ 발표에서 현행 연수생제도를 보완하는 선에서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노동부는 올해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혀¹⁶⁾, 정부

15) 대한매일 3월 20일자 기사참조

16) 중앙일보 3월 6일자 1면기사 참조

안 이주노동자관련 정책방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불투명한 가운데 놓여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주요한 흐름 하에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의 거주자로서, 노동자로서의 삶과 노동현실에 대한 사례를 짚어보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상담유형

이주여성의 유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노동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그 문제점 또한 다양하고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1에서 굵은 선으로 구분한 것은 연수 또는 취업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를 말하며, 해외투자(D-3-1)비자의 경우 성비에 있어 업종별추천연수생보다 오히려 여성이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예술홍행 자격의 경우 여성이 82%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뒤이어 살펴볼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편 방문동거(F-1)자격은 상당수가 국내·외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체류중인 것을 말한다. 위 표-1에 나타나지 않은 2001. 2.기준 법무부자료에 따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남성이 121,018명, 여성이 67,977명이 체류하며 노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1] 국적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¹⁷⁾

[2000. 통계청발표자료]

체류 자격 성별	총계	예술 홍행 (E-6)	방문 동거 (F-1)	거주 (F-2)	해외 투자 (D-3-1)	증기협 추천 (D-3-2)	수산업 추천 (D-3-3)	건설협 추천 (D-3-5)	연수 취업 (E-8)	소계	기타
전체	210,249	3,916	39,355	22,921	26,103	77,155	748	453	2,068	106,527	37,530
여성	87,500	3,223	28,816	10,745	14,101	16,083	2	0	500	30,686	14,030
남성	122,749	693	10,539	12,176	12,002	61,072	746	453	1,568	75,841	23,500

이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단체에 상담해오는 유형도 산업재해, 임금체불, 적립금미반환의 문제,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의료문제, 혼인의 성립과 해소, 쉼터, 성희롱 등으로 전체 상담건수 중 15.8%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01년 상담통계표¹⁸⁾

상담 종류	산업 재해	임금	의료	구타 폭행	출국	결혼 이혼	국적 난민	쉼터	기타 (성추행, 사망 등)	합계
전체상담수	41	279	154	10	43	9	4	17	37	594
각상담의 비율(%)	6.9	46.9	25.9	1.7	7.3	1.6	0.7	2.8	6.3	100%
이주여성상담수	2	36	31	·	2	9	2	8	4	94
여성상담이 차지하는 비율(%)	4.9	12.9	20.1	·	4.6	100	50	47	10.8	15.8%

이주여성의 의료상담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한 이혼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상담을 하면서 특징적인 것은 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뿐더러, 대개가 남성이주노동자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권리를 표현하고 상담을 의뢰해 오는 것 또한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17) 본 표는 2000년 통계청자료를 기준으로 본 발제문에서 주요하게 다룬 이주여성의 체류자격별로 구분발췌한 것이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총 30개가 있으나, 본 표에 기재하지 않은 체류자격별 현황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18) 위 표는 2001년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과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의 상담통계를 합산하여 통계화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인남성 또는 이주노동자 안에서 일상적으로 예기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위험 탓인지 결혼을 하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도 공장이나 가정방문에서 쉽게 발견하는 사실 중의 하나이다. 이때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떠맡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상담단체들은 임금체불을 해소하거나, 산재보상, 의료문제 등에 있어 1차적인 문제해결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있는 형편이고, 다양한 업종과 지위에서 제도적인 억압과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보편적 인권의 신장은 요원한 상황에 놓여있다.

아래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체류자격이나 업종별로 구분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제조업의 이주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하고 있으며,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있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등록, 미등록을 막론하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같은 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와 달리 연수생의 경우는 이들 상당수가 사실상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노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상담과정에서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이주여성 가운데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정도이고, 저임금에 장시간노동, 직장내 성희롱, 폭행, 전화·서신 제한, 심지어 감금노동에 이르기까지 그 인권침해의 유형도 다양하다.

아래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우리는 관리자의 엄격한 통제아래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8시간 3교대근무를 하거나 매일 8시간 근무를 쉼없이 해야 했다. 주휴일은 없으며, 오직 월 1회 쉴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쉬지 못한다. 이렇게 우린 한국인 언니들과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네 월급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

는 것을 친해진 언니로부터 알았다. 언젠가 회사에서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상담과정에서 알고보니 이는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연수생'보호지침 발표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지급받게 되었다.

외출은 월 1회 정도있는 쇼핑(식료품구입)과 년 1회 정도 놀이공원을 다녀오는 게 전부이다. 걸어가도 될법한 시장(도보 10분 거리의 인근재래시장)나들이 때도 놀 희사버스로 다녔다. 기숙사에 공중전화가 있으나 스리랑카로 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금지당했고, 심지어 고향에서 보낸 편지마저도 전해지지 않았음을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알았다. 여권은 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관리자가 빼앗았으며, 월급은 기숙사한켠에 리스트가 게시될 뿐 통장을 만든 적도, 본 적도 없다. 쇼핑을 가거나 목돈을 스리랑카에 보낼 때는 쪽지에 필요한 금액을 적어 관리자에게 주면 찾아다주거나 송금해 주었다. 두 번째 송금을 해달라고 쪽지를 건넨지 두세달이 지나도록 스리랑카의 가족은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사례는 안양의 한 대형섬유업체에서 일했던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와 통제 하에 오직 일하기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행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기업 연수제 도입 10년이 넘도록 이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제도나 근거가 없다.

노동부는 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폭행·강제근로 금지, 수당지급 및 금품청산,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최저임금수준의 보장」 등 제한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한편 위장현지법인을 통해 연수생자격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국외에서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호지침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그나마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위 사례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업체를 벗어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즉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가운데 별인 권리 찾고자 하는 투쟁도 연수계약해지와 강제출국의 위협 앞에서 접어야 했고, 노동조합도 이들의 권리에 관심밖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수생'상태를 벗어난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래 사례는 최근 임금지급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한 여성의 당시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사례 2.

베트남 국적의 여성 미란(가명) 씨는 경기도 군포의 한 인쇄공장에서 남자친구 반肯과 함께 2년 넘게 일해왔다. 한달월급은 반肯이 기본급 900,000만원과 임금수당을 받는 반면 미란 씨는 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으로 650,000원을 받아야 했다.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면 욕설을 하고, 때론 때리기도 했으나 다른 공장들과 달리 무엇보다도 월급이 정기적으로 잘 지급되는 회사인지라 참으며 일해온 터였다. 공장이 이전할 계획을 알고, 이사를 가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대체할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을 더 해달라는 사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15일을 일을 더한 후, 이후 취업기로 한 인근공장 사장과의 약속 때문에 더 일해달라는 청을 들어줄 수 없어서 그만뒀다.

전직원의 급여지급일인 다음날, 매번 월급이 퇴근시간이 넘어서야 지급되는 것을 알았지만, 미안한 마음에 미리 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줄 요량으로 4시에 가서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었다. 퇴근시간이 되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사장실에 들어가 월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미란 씨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 직접 사장실에 들어갔다. 2층 사장실엔 사장과 미란씨 뿐이었고, 반肯은 1층에서 작업을 돋고 있었다. “사장님, 월급주세요”라고 하자 사장은 뺨을 때리고, 전신을 가리지 않고 구타했다. 읊면서 밖으로 나왔고, 1층에 있던 남자친구가 올라와 공장에서 이번엔 사모님에게 “우리 월급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사장실에서 달려나온 사장이 뒤에서 발로 거둬쳤다. 위기감을 느낀 반肯 씨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갈구리를 집어들고 슬슬 뒷걸음 쳐서 도망갔다. 이 모든 과정을 10명이 넘는 남녀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켜보았으나, 아무도 사장의 구타를 제지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히려 “저놈잡아”라는 사장의 호령에 뒷걸음치는 반肯을 쫓아가는 노동자도 있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사장은 남아있던 미란 씨를 다시금 때렸고, 미란 씨는 극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위 사례에서 보여지듯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라고 인권상황이 연수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연수생에 의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받는다거나,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수생이탈을 부추기는 유인이 된다는 얘기도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사회 뿌리깊은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관행 등에 기인하여 동일노동을 함에도 임금에 있어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하고, 사업장안과 밖에 상존하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위험 앞에 놓여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 월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모성보호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체류’와 ‘노동’이 불법으로 규정된 채,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해고당하는 원인이 되고, 이를 이유로 관련기관을 통해 부당해고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임금을 못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라는

지위 때문에 이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위의 사례처럼 폭행을 당했을 경우도 강제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2. 국제결혼의 실태와 문제점

여성의 국경을 넘는 이주의 또다른 흐름은 국제결혼이다. 한국에서 미등록노동자로 또는 연수생으로 노동하다가 한국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가정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특정종교나 사설 알선업체들에 의해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정종교의 경우 이주여성의 국적이 필리핀과 일본 등 제한적인데 비해 알선업체들의 경우 러시아, 타이, 베트남,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감에 있어 겪게 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인권침해문제가 상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즉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설 수 밖에 없고, 자국의 보호를 벗어나 특별한 보호망이 없는 가운데 자칫 성매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래 사례들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례3.

도 종교단체를 통해 한국남성을 만나 결혼하여 2000년 2월 4일, 한국에 입국한 35세의 필리핀 여성 000은 천안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비교적 가족들과 잘 지냈고, 임신하여 2001년 3월 28일 출산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루어진 수술뿐만(필리핀여성들은 주로 자연분만을 함)으로 충격을 받고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퇴원 3일후에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서울 필리핀노동자를 위한 쉼터에서 잠시 머물기도 하였으나 다시 가출, 4월 20일경 안양에서 노숙자로 발견되어 본 복지관으로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영양실조와 대인기피증상을 보였고 먹기를 거부하였다. 3일을 머무는 동안 돌보는 이의 정성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씻기도 하여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시 말없이 사라져 행방불명된 지 15일후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아사였다.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은 혼인후 2년이 경과하고, 소정의 귀화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위 여성도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과 자치단체는 본 단체에 떠넘겼던 것이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에 있어 정착초기 언어와 문화, 한국생활에의 적응에 있어 어려움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결혼생활 중에 가정폭력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상당수 여성들이 국적취득을 위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상담해 오고 현실이다.

한편 알선업체나 개인에 의한 국제결혼사기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4.

페루현지 사정에 밝은 김00가 국제결혼을 빙자하여 2000년 11월 19일/12월 6일/12월 14일 각각 3차례에 걸쳐 페루여성 3명을 한국에 입국시켜 안산에 살고 있는 친구 이00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1인당 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 소개비 명목으로 700-800 만원을 받으면 남는 장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3명의 페루 여성들 데리고 있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비롯한 부대비용이 들자 주위의 남자들에게 소개시키고 식사를 사게 하고 나중엔 매춘까지 시켰다. 속은 것을 안 페루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한국주재 페루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수사에 나서고, 이 여성들은 쉼터에 머물도록 하였다.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갔다.

3.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앞서 표-1에서 예술홍행(E-6)비자의 여성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주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이주여성인권연대 소속 상담단체들에서 접수한 사례는 많지 않을뿐더러, 충분한 접근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들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와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

고,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 바이기도 하다. 다음은 기간 성매매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펼쳐온 새움터의 조사¹⁹⁾에 나타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는 외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고 있다.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페루 등지의 여성들이 이미 국내로 유입되어 있다. 이 여성들의 인권침해실태는 심각하다. 성매매의 강요, 폭력, 강간, 위협, 착취, 질병, 낙태강요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으며, 한국에는 이들을 보호할 만한 법률과 제도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대사관이나 소수의 단체들이 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국제적 인신매매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인신매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에서 소수의 여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매매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E-6비자(공연예술)를 허가해 왔다. 처음에 외국인 여성들은 미군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에 주로 고용되었지만, 지금은 한국남성 성구매자들을 위한 성매매업소에까지 국제적 인신매매가 확대되고 있다.

위의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국적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5.

베트남의 하노이에 거주하던 20대 초반의 여성 6명은 현지한국기업(노동부에 해외인력파견사업 허가를 얻어 영업중에 있던 업체)으로부터 한국의 봉제공장에 가서 월 미화 500\$를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일선을 받고, 계약금으로 각자 미화 5,000\$에서 6,000\$ 사이의 금전을 현지에서 지급하고, 2001년 중순 입국하였다. 입국즉시 최초 계약과 달리 송탄미군기지 앞 유흥업소로 가게 되었고, 당일 저녁 송탄에 도착하자마자 유흥업소의 무대에서 속옷차림으로 춤출 것을 강요당했다. 모두 경악하여 업소를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였다. 3명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나왔고, 2명은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끝에 쫓겨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2001. 12, 새움터.

위 내용은 도망 나온 여성 중 1명이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 산재보상절차를 밟던 중 여권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남은 1명의 여성을 구해달라는 상담을 받은 것이다. 본 단체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방문했으나, 남은 1명의 여성은 끝내 찾지 못했고, 당업소주인은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거라고만 하였다. 한편 업소주인은 수십개에 이르는 알선업체(기획사)들의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 중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였다.

현장방문이후 전화확인한 결과 베트남의 가족들은 위 여성과 5개월 째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로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같은 입국을 알선한 업체가 노동부에 의해 폐업조치되어, 관련자들을 찾기가 곤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다.

III. 마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40만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오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나, '외국인'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바라볼 때, 이주자들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 또한 한국사회가 배타적 단일민족주의와 인종적 편견을 벗어던지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본 글에서 몇 안되는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인권유린실태는 단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거나 과거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국적이고 조직적이며 여전히 현재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필자는 연수제도 등 제도적으로 인권침해를 낳고 있을 뿐, 사실상 이들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찾지 못했다.

끝으로 우리의 상담활동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지원하거나, 쉼터를 제공하는 등 1차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한 실정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거주자로서, 노동자로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본 토론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관련단체들이 정부정책의 제

도적인 변화와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한국사회와 이주여성노동자

모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사무처장)

I. 들어가며

국내 3D업종의 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외국인노동자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지도 이제 10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정책과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답보한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좀 더 특수한 형태를 띠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노동권·생활상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문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노예 행각이 국제사회 인권단체 및 UN에 보고되어 한국 기지촌 성매매 인권유린이 국제사회 문제로 알려지고 있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현 상황이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현재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 받고 있는 연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한채 2년 연수에서 1년 연수, 2년 연수취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로 방치되는 결과와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썼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성차별적 노동조건과 환경,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II. 여성이주노동자의 현황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중 여성의 비율은 30.2%이며, 그 중 87.5%가 생산직에 근로를 하는 산업연수생이며, 12.5%가 엔터테이너먼트 비자로 입국한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필리핀, 러시아여성들이다. 특징적인 것은 산업연수생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크게 증감추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1999년도에 비해 2001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827명인 12.5%가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착취와 인권유린이 국제사회에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구분한다면, 생산직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 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와 영어권의 학원강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이며,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는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추산할 수 없는 식당, 여관, 다방,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외모가 비슷하고 한국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취업이 용이한 중국 조선족들이다.

한국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덧붙여, 전형적인 한국사회문화적 특성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 성폭력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직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표1> 단기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 법무부 2001 통계자료

	연수비자				연수취업	예술홍행	합계
	해투연수생	중기협연수생	수산업	건설협			
여성	13,580	14,808	1	0	2,008	4,331	34,728
남성	12,250	57,247	1,057	1,030	7,676	761	80,021
전체	25,830	72,055	1,058	1,030	9,684	5,092	114,749

<표2> 아시아주계 국적별 체류자 현황, 출처 : 법무부 1999년 통계자료

	한국계중국	중국	몽골	필리핀	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성	22,916	17,495	6,591	6,244	5,999	2,515	3,583
여성	23,815	13,055	4,839	4,276	3,755	1,114	855
전체	46,731	30,550	11,430	10,520	9,754	3,629	4,438

III. 이주여성노동자 실태와 그 문제점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성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남녀평등권과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여 오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전통적 유교가치관인 가부장적 사회풍토와 의식에 의해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근로보호는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4년 12월 27일 한국정부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부터 여성인권과 고용차별적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법적기준과 그 기반이 마련되는 단초가 되었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요구에 대한 욕구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확산되면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 4일 제정되었고, 1989년 4월 1일, 1995년 8월 4일 두차례에 걸친 법개정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고, 1999년 2월 8일 다시 재개정되어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1년 1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들은 남녀고용평등권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그 내용이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국제적 입법수준에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여성노동자를 위한 고용차별적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물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사업장내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성노동자 스스로 권리주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여성노동권과 고용평등은 보장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1995년 노동부 예규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등에

관한 부분은 전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적용대상으로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그 대처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처벌은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인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을 갖는데, 이주여성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고,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자인 경우 신분적 한계로 더욱 더 성폭력은 은폐되고 만다.

1) 장시간 노동

과거 고도경제성장정책의 희생양이었던 산업체부설학교 나이 어린 여공들의 일자리를 현재는 저임금 장시간노동력인 이주여성노동자들로 교체되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섬유, 전자, 제조업종 등에 2교대 12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16시간을 일하거나, 국내노동자들이 쉬는 명절, 휴일에도 근로를 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여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2) 감금노동

이탈방지를 이유로 외출통제, 외부접촉차단, 전화, 서신교환, 방문, 외박 등을 규제하거나 심지어 밤에는 기숙사 방문을 밖에서 잠그는 사실상의 감금상태의 노동을 시킨 업체들이 적지 않다. 외출을 할 때도 한국인 관리자 인솔하에 단체로 하거나, 아니면 1~2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만 외출허용, 외박금지, 규정된 귀가시간에 내에 돌아가야 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이 말살되고 있는 것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다.

▶ 사례1

구미공단 P섬유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연수생 9명은 2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극심한 외출통제에 못견뎌, 회사 수위가 식사를 하러간 틈을 타 회사담을 넘고 상담소를 찾아와 고통을 호소했다. 다음날 상담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길을 잊어버릴까봐 외출통제를 했다며 변명을 했다. 이후 절대 외출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정리를 했지만, 3개월 후 연수생 9명은 결국 전원 이탈했다.

▶ 사례2

경북구미의 S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연수생들은 회사에서 이탈을 방지한다

는 이유로 외출통제는 물론이고 밤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숙사방문을 밖에서 잠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도 연결시키지 않아 남자친구가 상담소에 의뢰하여 노동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했다.

3) 건강과 의료(임신 등)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기간이 확되어 국내여성노동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임신을 할 경우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야간·휴일근로를 제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을 할 경우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연수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기 때문에 부득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고, 또 중절수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곧 바로 근로를 해야하는 그래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인 경우 의료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생명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 성희롱

2년전부터 직장내 성희롱 관련규정이 시행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또한 성희롱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여성노동자들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성폭력피해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1

양산의 B업체서 일하던 그레이스(필리핀 여성)는 사장이 가끔식 작업 중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기도 하고, 밤중에 사장이 술에 취해 기숙사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두려워했다. 상담을 받아 사장과 얘기하였을 때, 사장은 '아이가 착하고 예뻐서 귀여워 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정리됐지만, 그 후 그레이스는 연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힘든 생활을 했다.

▶ 사례2

중국인 연수생 마정정(36세)은 경산의 DS섬유공장에서 사업주와 수위에게 일상적인 성희롱을 당하였고, 샤워실이 열악하여 외부에서 쉽게 훔쳐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술취한 한국동료남성이 기숙사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중국인 연수생 6명 전원이 타 연수업체로 이전을 하였다.

2) 성추행·성폭행

▶ 사례1

베트남 여성노동자 다나(27세)는 영천군 ST회사에서 한국인 계장이 밤10시경 기숙사에 들어와 껴안고,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다나가 심하게 저항하자 발로 구타하여 치아를 다쳤다. 다행히 성폭행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휴유증을 앓고 있다.

▶ 사례2

경북 달성군 SG회사에서 일했던 인도네시아 수르띠(26세)는 작업현장에서 사장이 입을 맞추고, 껴안는 성추행을 당하였다. 이 후에도 사장은 운전을 가르쳐준다면 나가자고 하였으며, 여관에 가지며 지속적으로 심한 성추행과 함께 수르띠를 괴롭혔다. 결국 수르띠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남자 동료 스리랑카인 아지도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수르띠는 불법체류 신분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3) 폭언 및 폭행

최근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32.4%가 폭언·폭행을 경험했으며, 폭언·폭행으로 인한 퇴사가 39.1%로 나타났다. 국내여성노동자들도 이러한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더욱 더 심각한 폭언·폭행을 당할 것이라 본다. 의사소통의 장애, 저급한 인종으로 보는 차별 등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남성근로자로부터 폭행·구타를 당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도 상당수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새끼야' 등의 욕설로서 작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욕설 등의 비속어를 듣기 때문일 것이다.

관리자의 폭행

▶ 사례1

중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경북 구미공단 동제화섬에 일하던 연수생 란수영은 회사 관리자장이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 강제출국시키겠다고 사무실로 끌고 가서는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하게 구타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체를 휘어잡고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다. 상담소에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의 민사적 배상과 가해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업체에서 시민대책위에 서 요구사항 전부를 수용하였고, 업체로부터 치료비 외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한국인 동료의 폭행

작업현장에서 한국인동료와 이주노동자간의 폭행은 빈번하다.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갈등과 폭행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언어소통의 장애가 일차적 이유가 되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내국인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자신보다 더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이 대표적일 것이고, 실제적으로 폭행이 발생해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처벌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심한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면박을 당하거나 참고 그냥 넘긴다. 그래서 내국인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내국인 남성동료로부터 폭언·폭행을 더 심하게 당할 것이다.

▶ 사례2

구미공단 H섬유에서 일했던 중국인 왕매화는 한국인 작업반장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했다. 사건당일 왕매화는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핸드폰을 받았는데 작업반장이 전화를 빨리 끊으라며 화를 냈다. 그래도 빨리 전화를 끊지 않자 왕매화의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던졌으며, 이어서 발길질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왕매화가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자 더욱 더 화가난 작업반장은 공장문을 잠그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V. 일상 생활권에서의 문제

1)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거주공간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길어야 몇 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가능한 주거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숙사가 열악하거나,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사업주들은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부 영세사업장에 취업

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공장내의 한 캐년을 개조하여 임시변통으로 만든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는데, 이와같은 주거환경은 난방이나 샤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과 분진 등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일상적 생활에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숙사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사례1

대구 O섬유업체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 죄세핀과 에드나는 3인조 강도에게 강도폭행을 당했다. O섬유업체는 공장내의 한 캐년을 개조하여 기숙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장치가 없어 옆에 있는 쪽문을 이용해야 했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다. 사건당일 연수생들은 화장실을 갖다와서 공장문을 닫지 않았으며 기숙사 옆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강도들이 침입해 있었다. 이와같은 임시변통으로 만든 기숙사의 안전장치의 부재로 발생한 사건으로 죄세핀은 현재 연수업체를 이전하였고, 에드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 사례2

김천 S정밀은 중국현지회사를 통해 여성이주노동자 60명이 근로를 하는 제법 큰 중소업체이다. 그런데도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샤워실 출입문이 없어 샤워를 할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데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달아주지 않았다. 또한 외부에서 기숙사 창문을 통해 침입이 가능한데도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를 이유로 기숙사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 2001년 2월 외부인 남자 2명이 샤워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샤워중이던 중국인 여성연수생 2명에게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동료들의 고함소리에 놀라 도망을 갔다. 이 사건 이후에도 회사는 외부출입 통제만 강화하였을 뿐 출입문과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VI. 마치며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의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등록을 하면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단속을 강행한다는 추방정책을 발표했다. 26만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한국경제성장의 일부분을 전담하였다. 사양업종,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지 않았다면 한국경제성장은 그 만큼 후퇴를 하였을 것이다. 전년도 7월 법무부의 비인간적이고 무리한 강제단속으로 인한 엄청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과하고 범법자로

치부하여 소모품 버리듯 내쫓려는 추방정책은 분명 심한 비난과 함께 실패할 것이다. 오뉴월 파리집듯이 내치는 정부의 추방정책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얘기 할 정도로 여성 인권정책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국내여성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보장법상의 시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관리 및 교육이 시행되어, 여성의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증언 --몽골 여성 미라--

한국에서의 나의 생활

1995년 10월 18일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2틀간 지내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전화하여 저를 찾아 그 교수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 교수님 집에서 한달간 살아습니다. 몽고에 있는 제1 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위한 시험이 있었는데 22명이 시험을 보아서 그 중 2명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두 명중의 한사람이 되어 나 미라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보니 그쪽 병원과 여기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서로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몽고에서 내가 들은 것은 한국정부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보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한명만 그렇게 해주고 한명은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200달러를 처음에 냈는데 나중에 또 1800달러를 내라고 했습니다. 같이 온 자야는 한국의 몽고 대사관에 아는 사람중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지원이 갔기에 저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몽고에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 보건부처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몽고정부의 공무원들은 이젠 나 몰라라 하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당시 몽고에 있는 그 제1병원에는 저희 어머니가 내과의사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37년간 의사로 근무하시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대줄 수 없었고 한국에서도 아무도 아는 이도 없었고 장학금을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간 이교수님댁에 머물면서 그 사모님이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파손된 책을 손질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신 것입니다. 20일간 일하고 4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또 기다릴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연세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65만원의 월급을 준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설거지와 식당에서 필요한 모든 허드렛일을 하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였는데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달간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일도 너무 힘들었지만 식당에 있는 방에서 혼자 살았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국말도 잘 모르고 또 한국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하여 혼자 지내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설거지를 해놓은 그릇더미가 쓰러져 그릇이 많이 깨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너무 화를 내었고 '가라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나는 월급을 받고 나서 그릇값 98,000원을 물어주고 나서 경기도

광주에 있다는 몽고 사람을 찾아 갔습니다.

내가 찾아간 광주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몽고를 떠나올 때 그의 부모님이 물건을 갖다 주라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힐튼 호텔에 2틀간 지내는 동안 그 사람이 부모님의 보내준 물건을 찾으려 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두고 갔기에 알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아보아 겨우 찾아 갔습니다. 가서보니 4명의 몽고남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몽고사람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1994년인가 혹은 93년인가 30명의 몽고사람들이 한국기업의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회사가 망하여 이들은 갈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한국에 남아 공장에 불법으로 취업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찾아간 공장에 있던 4명의 몽고사람중 3명은 그때 연수생으로 온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비즈니스하러 왔다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게된 몽고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일이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몽고에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러시아의 상트 페테스부르크에서 4년간 의학을 공부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몽고에 다시 돌아와 몽고대학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의학 공부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나라의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몽고에서나 혹은 러시아나 폴란드 그리고 동독의 학교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저는 러시아로 갔던 것입니다. 몽고에 돌아와 학교를 마친 뒤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수도인 울란바토르 근처에 있는 한 위성도시에서 일하였으며 그후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제1병원 그러니까 저희어머니가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9개월간 실습을 가진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에이즈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에 오게 된 것은 에이즈에 관한 공부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4명의 몽고인들은 용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절대로 쓸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우선 잠 잘 곳이 없었습니다. 4명은 콘테이너 박스로 만든 2개의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몽고 음식을 만들어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4달만에 처음으로 고향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의 행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 들어 갈 수 없어서 몽고인중에 한사람이 주말에 몰래 공장에서 용접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쓸 수 없다는 회

사였기에 우리는 피를 내었습니다. 용접을 가르쳐준 몽고인이 나보고 일찍 공장에 들어와서 모자를 깊숙히 눌러쓰고 용접할 때 불을 가리는 유리마스크를 얼굴에 가린채 무조건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장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모두 놀랐고 그리고 나서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에 사장님과 사장님 형과 부모님 그리고 사모님과 식당 아줌마들과 모두 모여 회식을 하면서 일을 시작해도 된다고 허락하였습니다. 월급을 55만원이었고 식비가 5만원으로 모두 60만원의 월급으로 시작된 공장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두 달간 일하였는데 어려움은 방이었습니다. 네남자가 방을 하나쓰고 내가 혼자 쓰게 되어 남자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공장을 근처의 가게 아줌마가 소개하여 곤지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공장에서 일을 다시 시작한 이후 계속 야간을 하였는데 월급은 65만원이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일하였는데 혼자서 야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내가 전부인 이 공장에서 사모님은 주간근무를 나는 야간근무를 하게된 것입니다.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혼자서 야간을 하게되어 무서운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난로도 없이 일하게 되어 너무 추웠고 기계 4개를 혼자서 뛰어다니며 보아야 했습니다. 시골에 뚝 떨어져 있는 공장에서 혼자 야간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달 조금 지난 다음 처음 월급을 받아서 얼마 안되는 날 사장님의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새벽 한 두 시쯤 이었는데 야간을 하고 있던 나는 사장님의 실을 갈려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밥먹었느냐'고 묻더니 나를 앞에서 껴안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는 사장님을 때리면서 반항을 하였습니다. 마구 사장님을 때려서 겨우 빠져나온 나는 너무 무서워 그냥 길을 달려 뛰었습니다. 몽고남자들이 일하던 동네에 있는 가게 아줌마에게로 갔습니다. 난 사장을 때렸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만 하였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줌마 앞에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약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후에 내 몸을 보니 허벅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실을 자르는 칼로 나의 허벅지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청바지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는 테 몽고 남자들이 도와주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몽고남자들이 그 공장으로 가서 사장님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은 없었고 사모님이 말하기를 '사장님의 많이 화가 났다. 미래에게 많이 화가 나서 웃도 책도 다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월급 60만원을 주면서 사장님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사장을 때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얼릉 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거기라면 일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소개해준대로 김포로 갔습니다. 옷상자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몽고부부가 4명 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기숙사 등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50만원으로 계속 임금을 해도 월급을 똑같았습니다. 월급이 작아서 4명의 부부들은 하나둘씩 다른 일을 찾았고 결국 나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4개월 일하다가 나역시 월급이 너무 작아 일산의 어떤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이었는데 사장님 혼자서 일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주간 나는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나는 윗방에서 사장님은 아랫방에서 살면서 일하였는데 어느날 여자문제로 싸움을 하여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사라진 공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음 공장은 안경만드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월급은 65만원으로 사장님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은 아주 재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아닌 사장님 어머니가 큰아들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온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오시자 나랑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책을 찢거나 혹은 잠자는 얼굴에 침을 뱉거나 하여 같이 살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밀어드리기도 하면서 노력하였으나 정신이 너무 이상하여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소개로 간 다음 공장은 병아리 공장이었습니다. 일이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병아리가 되어 나오도록 하는 일이었는데 여기는 너무 바빴습니다. 기숙사도 좋고 텔레비전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밥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너무 공장안이 더웠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화씨 110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3개월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피아노 다리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여기는 넘 힘들어 차라리 병아리 공장이 낫다는 생각을 할만큼 힘들었습니다. 여자사장님이었는데 언제나 '빨리 빨리'였습니다. 콘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눈코 뜰새 없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둘째 치고라도 여사장님은 못살게 굴었습니다. 몽고사람들은 주로 가죽옷을 입는데 사장은 '왜 가죽옷을 입느냐, 귀걸이를 하느냐.' 등등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면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쓰레기 치우기부터 쉬는 날도 한시간도 쉬지 못하게 부렸습니다. 쉬는 날 식당에서 자신들이 먹은 음식까지 치우도록 하였고 짐장담그는 일부터 모든 허드렛 일을 쉬는 날까지 시켰습니다. 감기에 걸려 나가지 못하여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도무지 일을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떠난 후 덕소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이었는데 딱 한달 일한 후에 같이 일

했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친구만나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누가 와서 경찰이 온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여 가방을 싸들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하여서 도망을 나와 덕소에서 마석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람쥐 집'이라는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명태구이와 보리밥을 파는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달 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손님이 많이 안와서 다른 것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덕소에서 서울에 가려고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누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일했던 용접을 했던 공장의 공장장님이었습니다. 나는 일이 없고 갈곳이 없다고 말하니 우리회사에 가자고 하여 가보니 덕소에 있는 평화 마후라라는 공장이었습니다. 첫 공장인 동성 마후라 공장에서 일할 때 잘해주신 이분이 그순간의 은인이었습니다. 평화 마후라는 큰 공장이었고 동성 마후라는 이 공장장님이 다시면서 일을 보아주는 곳이었습니다. 가보니 파키스탄 노동자 4명과 베트남 7명 그리고 방글라데시 13명과 가나 사람 17명, 몽골 1명으로 된 큰 공장이었습니다. 스포트 용접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7개월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500만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월급이 적었는데 여기서도 나는 똑같은 일을 해도 남자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150만원 혹은 180만원이었는데 나는 겨우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500만원을 적은 월급으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국 아저씨가 일요일에 같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차들이 고장 났을 경우 용접을 해주고 차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많이 벌을 때는 하루에 10만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검사를 받으니 맹장염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였고 수술후 그 회사로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여자가 무거운 일을 하는 것이 수술후 위험하였고 또 기숙사도 더러워서 갈 수 없었습니다. 염증이 생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술비는 140만원이 나왔고 한달 통원치료하는 비용까지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사장님은 50만원 도와 주셨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힘들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쉬운 일을 찾아 수원으로 갔습니다. 수원에서 자동파 범퍼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폐폐일이었습니다. 평화 마후라 공장의 용접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먼지도 않고, 일도 힘들어서 4개월간 일하였지만 한달 월급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망하여 3달 임금을 받지 못하여 단돈 백원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옆공장의 사장님의 군포에 있는 한 공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공장의 사장님은 일본인이었는데 여기는 투다리나 호프집에서 쓰는 안주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60만원으로 기숙사가 없어 5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5개월간 일하였는데 회사가 또 일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아줌마들이 모두 나가 흩어졌습니다. 사장님은 나에게 고

맙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는 곳마다 나의 월급이 제일 적은 금액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군포에서 다른 공장으로 갔는데 거기도 역시 프라스틱 공장이었고 주야로 이교대 근무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몽고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자주 싸웠습니다. 나는 계속 그런 싸움 속에서 일할 수 없어서 수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프라스틱 공장에서는 혼자서 일하였는데 밤에 7시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스틱 원료를 넣기 위해 재료를 창고로 가져와 갈 때 무서워서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개의 끈을 허리에 묶어서 끌고 다니면 조금 덜 무서웠는데 나는 그저 사장님의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와이포 만드는 것이었는데 야간작업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든 것도 무서운 것도 참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월급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0만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58만원 혹은 60만원을 준다거나 하였습니다. 따져도 소용이 없어서 저는 그만 두었습니다.

다음에 스티커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잔업을 하여도 60만원 안해도 60만원인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외국사람은 안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공장은 인쇄공장이었습니다. 인쇄 공장에 있는 동안 몸이 아파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악기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4개월간 일하는 도중 사모님이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계속 술로 지나고 회사에 오면 말도안하고 하여 회사에는 일일 줄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만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 다음 전화기 만드는 회사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7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두달일하고 한달 월급 받고 다시 두달 일하면 한달 월급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만 늘 말하는 사장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노래방가자 밥먹으려 가자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싫다고 하면 눈치를 주면서 힘든 일을 시켰으며 일끝나면 아줌마들과 술마시러 나가곤 했습니다. 도저히 이분우기에는 적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전화기를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열심히 일도 안하고 매일 술마시러 나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양전진상 복지관에서 2개월 20일 살았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를 배우면서

지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복지관에서 대학교 어학당에 알아보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입학이 안되어 개인 교사에게 한글 쓰기를 배웠습니다.

이후 군포 구사거리에 있는 책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였고 3개월간 계속 야간만 하였습니다. 하루 일당이 35,000원 이었습니다. 3개월간 일하였는데 문제는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때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어서 300만원 집으로 송금 하였지만 모든 돈은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군포에 있는 프라스틱 공장에서 네팔사람 6명과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3개월간 일하였고, 네팔인들은 4개월 일하였습니다. 나는 2개월 못받았고 네팔인들은 3개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필터 만드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20일간 일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대학교 학위가 두 개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그 파키스탄 사람은 일도 안하고 나만 하루종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장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파키스탄 사람이 하는 말대로 순순히 있었습니다. 또라이 같은 파키스탄 사람 때문이 나는 또다시 그만두었습니다. 사모님은 나보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줌마 일이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의 덕천마을에 있는 화장품 인쇄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은 13년 일한 아줌마랑 또같은 임금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난 그 아줌마가 나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13년간 일한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나 기분 나쁜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이 78만원이었습니다. 시간당 5600원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지만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하고 밥도 같이 안먹고 물건을 던져주고 눈도 안맞추고 늘 비아냥 거리고 하여 도저히 같이 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의 일은 '소독이요?'를 외치며 집집마다 벌레 소독을 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소개해주었는데 이일은 하루에 35,000원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일정도 일이 있었습니다. 소독은 적어도 힘들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었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회사에서 리프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재를 위로 올리는 일이었는데 일이 재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 명절이 끼게 되어 일이 곧 없어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회사인데 자동차 브레이크만드는 공장입니다. 하루 일당이 17,000원으로 하여 월급이 510,000원입니다. 임업을 하면 150%를 주고 있으나 너무 임금이 작아 임업을 해도 6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되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앓고 그리고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고 싶으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돈이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떠나온 이후 몽고는 너무 달라져서 이젠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오랜 기간 일하신 아버지는 훈장 하나로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직을 하였고, 동생들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은 지금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동생도 공부를 제법 하였습니다. 대학교만 3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세 번 하여 가진 모든 것은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시고 오직 나하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 맡고 있는 지금 막막하기만 합니다.

나는 몽고에 돌아가 의사로서 다시 일한다 해도 공부를 다시 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의사를 한다 해도 의사 월급이 7만원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지만 월급은 겨우 10만원 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의술이나 러시어어등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잊게 되어 이제는 무엇을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y life as an asylum seeker in South Korea.

-My experiences as a part of the Anyang welfare center- (migrant worker : Pamella. MA-nsuma, Cameroonian)

I came to South Korea for my protection and begin another life after my escape from a detention camp in my country during my political activities when I was seeking for asylum, I was inform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n't take care of asylum seekers and I was given the address of Good Will Friends and Miss Kang, took care of my care explaining that their organization is won governmental, but was little assistance to offer.

At the UNHCR office, I was also informed they don't offer assistance to asylum seekers but could intervene in cases in the process of seeking asylum. I was stranded, with no money, no accommodation. I spent almost the my efforts finding a way to survive until when the Good Will Friends offered to introduce my case to Anyang welfare center if they could accommodate me.

At the Anyang Jeon · Jin · Sang Welfare Center

I made new friends, had comforts and felt I was hoping again my life was worth living. I had the opportunity to be listened and to an extent, my problems were solved. Special thanks to sister Cecilia for accepting me and accommodating my troubles. Some times I was ashamed to disclose them, but then, some body was always there to listen and advice.

My experiences at the center

I am more there happy and excited to share their experience with anybody there I met other migrant workers. They were very welcoming and looking happy. I had a job immediately through the help of one migrant worker called Jan. We shared our cultural experiences, played music, eat, and had classes together. Sundays are always joyful as everyone of us has an opportunity to talk, have fun and meet friends at the center.

My past life

I knew there was no way I would survive the hard conditions I went europe. I remember I used to stay at the subway for hours in the cold evening and imagining what life was all about. I tried to convince the immigration office for financial assistance to enable me get some food and accommodation also to get some warm clothes to protect myself against the cold. I was sick already I needed some drugs but no money to buy. I was often adviced to look for a job. To me, this was very unvisible nor possible because, I didn't use the language, the currency or the city. How do I start doing that? This was the question always in my mind.

I still was living in fear of being abducted. South Korea is too large and I hadn't any destiny through as an asylum seeker. This means that if I was being abducted, no body would even notice-there was any problem. I felt very unsecured and always afraid of going out. This is a big problem to me because I always feel my enemies could easily trace me.

My present life

I was given a lot of courage and hope to carry an again with life. This came from the center at Anyang. After some weeks there, I got a job and my day was nor ideal again. They were always interested over what was happening and always preapaved to assist me. I started feeling protected and I was loved.

My opinions as an asylum seeker in Korea

I am convinced the proceedings and conditions accorded to asylum seekers will change for good with time. A refugee is fair like any of you. Needs to talk to, needs to be listened and attended to and assisted when necessary. He or she has lost every thing or possessions and most of all misses his/her family and far from home.

My Gratiudes-

I sincerely would sent to extend my thanks to the Anyang welfare center and to sister Cecilia especially for all they have done for me. All thanks especially for the attention and love while brought hope again in my life. Thanks to Miss Kang, of the Good Will Friends for sacrificing the time and patience to listen to me. She made it possible for me to meet sister Cecilia. I wouldn't forget to extend my warmest thanks to the migrant workers for accepting my company and assisting me when in need. Thanks to Miss Lee of the immigration office for sacrificing her patience and being gentle to words during my interviews. I am presently working. This enable me take care of my needs and provide some comforts wonder what my life would have been if I had nor been at the Anyang welfare center.

편집자 주 : 이 기록은 한국 사회에 아직 낯선 단어인 Asylum Seeker로 한국에 온 아프리카 여인의 이야기이다. 다양한 경로로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당사자가 기록한 것을 정리한 것임.

<성명서>

2002. 3. 25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전면 거부한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를 소모품 버리듯 내쫓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의 방안으로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등록을 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두고, 5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강력하게 강제단속한다는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발표하였다.

26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한국경제생산의 일부분을 전담하였다. 사양업종,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경제성장은 그만큼 후퇴하였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전년도 7월에도 비인간적이고 무리한 강제단속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또한 드높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과하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여 소모품 버리듯 내쫓으려는 추방정책은 분명 여론의 심한 비난과 함께 실패할 것이다.

너무나 가난하여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돈벌이 하러온 이주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는가, 있다면 빈곤이 원인일 것이다.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책임은 애초부터 음성적으로 외국인력 시장을 형성해 온 한국 정부에 있다. 따라서 오뉴월 파리 잡듯이 내치고자 하는 정부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자진신고'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증가할 불법체류자를 우려하여 마련한 출속정책으로, 이는 분명히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다.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한 이주노동자가 규정된 기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벌금 등의 사후처벌이 뒤따르고 있어 사업장에서의 감시와 통제는 심각할 것이다. 그 예로 구미공단의 S업체에서 근로 했던 중국인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였는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미루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26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부담스럽고 창피스럽기 이전에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든 불법체류자는 존재한다. 단 우리사회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오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개선되어야만 해결 가능할 것이며, 현재 한국어가 능숙하고 숙련노동력인 불법체류노동자를 합법화하는 방안만이 대안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싱가포르, 대만 등의 국가는 불법체류자에게 '그린비자'를 제공하여 체류를 합법화 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파독 간호사·광부도 독일정부가 제공한 영주권으로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꼬이게 하지 말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 추방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제 노동·인권단체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강제단속을 강행할 시에는 전국의 모든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단체 및 사회·노동단체는 강력하게 연대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이주·여성인권연대 /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